여행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안)

2025. 00. 00.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이 표준계약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여행업종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대리점거래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점에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특히 **개정된 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양 당사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간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최대한의 선의로 상호 협력한다.

③ 공급업자는 대리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리점의 재무건전화, 근무환경개선 등 대리점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④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관련 법령 준수와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직접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관련 법령 준수 등]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② 대리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급업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업무의 내용]

①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업 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리점에 위탁한다.

1. 공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 및 국내·외 항공권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행알선 및 모집, 여행 관련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과 실행과정 등의 업무 대행

2.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행계약서 체결 및 여행요금 수납에 관한 업무 및 부대업무 등의 대행

3. 여행자 등 고객관리 및 사후서비스 등 응대 관련 업무의 대행 등

4. 기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내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대행

② 제1항의 위탁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사전협의하여 별도의 약정서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는 국내·외 항공권 및 숙박, 공급업자가 기획·제공하는 모든 패키지상품, 여행 관련 용품 및 대리점의 요청에 따른 개별 희망상품 전반을 포함한다.

제6조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공급업자의 의무]

① 공급업자는 여행계약서,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 등 여행계약서 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와 내용을 대리점에 제공하여야 하며, 대리점의 여행상품 판매 효율화 및 극대화를 위한 예약시스템, 컨텐츠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공급업자는 특정대리점에 대하여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를 몰아주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취급하는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등을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해 온라인판매하는 경우, 대리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요청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온라인판매 등 관련 정보를 대리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제공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거나 일부만 제공할 수 있다.

⑤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일방적 또는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특약을 설정할 수 있다.

⑦ 공급업자는 대리점을 통해 여행자 등 고객에게 판매된 자신의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대리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리점이 그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및 진행에 관한 대리점의 의무]

① 대리점은 대리점계약 상의 소재지 내에 영업장을 두고, 일반 혹은 국외여행업에 등록하여 여행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상표(서비스표)를 사용 또는 활용하여 광고 등을 하는 경우 공급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의 기준, 사용조건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판매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고,

그 판매에 있어 「관광진흥법」 제14조 제2항 및 「여행업표준약관」 제6조에 따라 여행계약서, 여행약관, 여행일정표 등을 전자우편, 우편, 직접교부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반드시 전달하며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점은 고객의 불만 및 요구사항에 성실히 대응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공급업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 대리점은 제4조에 따른 업무 위탁범위를 넘어 공급업자의 상표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획 · 판매할 수 없다.

제8조 [여행상품의 예약 관리 및 거래조건]

① 여행상품의 예약 관리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사전에 상호 합의한 예약시스템 등 적정한 방식을 통하여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② 국내 · 외 여행상품은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업표준약관」에 의거한다. 다만,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의를 통해 별도의 여행약관을 두는 경우 「여행업표준약관」에 기초하여야 하며, 대리점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내 · 외 항공권은 해당 항공사 예약 규정에 따른다.

④ 국내 · 외 호텔 등은 해당 호텔 예약 규정에 따른다.

⑤ 제2항부터 제4항 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에 관한 세부적 내용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사전협의하여 별도의 약정서로 정할 수 있다.

⑥ 대리점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여행약관과 표준약관과의 차이를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취소수수료 등에 관하여 대리점이 부담한다. 다만, 대리점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여행상품 대금의 결제]

① 고객이 현금으로 여행상품 대금을 결제하고자 할 경우, 대리점은 고객이 상품의 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고객별로 부여된 공급업자의 가상계좌 또는 공식계좌로 상품 출발일 기준 7일 전까지, 항공권은 구매확정 또는 발권 전까지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결제일과 입금일은 모두 영업일 기준으로 한다.

② 고객이 카드로 여행상품 대금을 결제하고자 할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홈페이지 상 예약확인·결제 메뉴를 통하여 직접 결제하거나,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결제시스템 또는 ARS시스템 등을 통해 직접 결제하도록 하고, 항공권은 구매확정 또는 발권 전까지 직접 결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 고객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 증빙서류 관련 사항을 고지하고, 해당 증빙서류 등을 공급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금결제 방식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사전협의하여 별도의 약정서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판매수수료 및 정산]

① 대리점은 동 계약 체결 후 공급업자의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대리점이 고객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하였을 때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상호 약정한 판매수수료 금액 및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기준은 일반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가격의 ( )%로 하며, 개별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공급업자는 자신에게만 이익이 되는 일방적 판매수수료 등의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대리점 지원 등]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원활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 전산장비 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업무수행을 위해 별도 약정서에 의거 대리점에게 대여 또는 지원한 시설과 물품은 공급업자 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합의하여 소유권

자로 인정한 자의 소유(이하 “소유권자”라 한다)이며 대리점은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리점은 제1항의 시설과 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공급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지정한 자의 관리상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대리점은 제1항의 시설과 물품에 대하여 분실·도난·멸실·훼손 또는 지원 및 대여에 관한 별도 약정 위반 시 공급업자 또는 소유권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대리점과의 공정한 배분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회수하거나 재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사전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⑥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요청에 따라 대리점이 지정하는 영업점포 등에 대하여도 시설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설과 물품에 대하여 대리점은 본 조에서 정하는 제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기준 및 인테리어]

① 대리점의 영업장 면적 및 내부시설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되, 공급업자가 정한 최소 기준을 준수한다.

② 공급업자는 매장 임대료, 영업장 시설, 간판 또는 인테리어 등 시설물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업자의 지원에 따른 대리점의 의무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와 대리점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공급업자는 인테리어 시공 품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리점에게 시공업체를 제시할 수 있다. 단, 공급업자는 이 경우 반드시 2개 이상의 업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시방서와 각 시공업체별 시공견적 등 관련 정보를 대리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대리점은 제3항의 견적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급업자에게 시공업체를 다시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대리점은 제4항에 따른 요청에 공급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시공업체를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제시한 수준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최초 시공 후 인테리어 재시공 여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합의에 따른다. 단, 공급업자는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테리어가 훼손되거나, 최초 인테리어 시공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대리점에 한하여 인테리어의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시공비용의 (　　)%를 지원한다.

제13조 [각종 불공정행위 등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한 즉시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여행상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등급을 구분하여 월 또는 연매출 달성을 강요하거나 제공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중도해지, 상품 제공의 중단 등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기간 중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급업자는 그 밖에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타 공급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대리점이 습득하게 된 고객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주문한 제품의 종류나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내지 조사 협조한 행위를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대리점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해하거나, 대리점단체 설립・가입・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⑪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허위 과장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영업상 비밀과 고객정보 보호의무]

① 대리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급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업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와 같다. 다만, 공급업자의 관계 법령 위반 사실 등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대리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고객정보를 보호하여야 하고, 고객정보를 업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등 고객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리점은 영업점포 등에서 자신이 고용한 직원에 의하여 고객정보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공급업자 또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리점은 이를 배상한다.

제15조 [담보의 제공]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리점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대리점에게 요구할 수 있고, 대리점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대리점은 부동산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의 제공,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채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

③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의 설정이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선택)

□ 공급업자 부담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50% 부담

제15조의2 [보증금 반환]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대리점은 정산수수료 등 폐점비용(미지급금)을 공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대리점이 대리점계약 체결 시 공급업자에게 지급한 거래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대리점에게 거래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 반환기한은 당사자 간 합의로 별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다.

④ 제3항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거래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현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보증보험 등의 담보물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각 담보물의 조건 및 특성에 따라 반환절차를 진행한다.

제16조 [계약기간 등]

①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년으로 한다.

②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③ 대리점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업자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 갱신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④ 공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대리점이 인테리어 재시공을 할 경우, 재시공 이후 계약기간은 대리점이 재시공을 시행하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단, 공급업자가 전액 비용을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인테리어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불가항력]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자신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등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방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제반 의무로부터 그 책임을 면한다.

제18조 [부속 약정서]

① 이 계약서에 부속된 약정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서 교부 후 최소 2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변경할 수 없으며, 부속 약정서를 변경하는 경우 공

급업자는 대리점과 그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부속 약정서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계약의 내용보다 대리점에게 불리하거나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제19조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

①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에 기초한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공급업자에 대한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영업양수인은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등]

①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고절차 없이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리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분 기타 거래정지를 당한 때

2. 대리점이 영업의 폐지, 변경 또는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3. 대리점이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대리점이 압류, 가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때

5. 대리점이 위탁업무 수행 상 취득한 고객의 제반 정보를 위법ㆍ부당하게 유출ㆍ사용하거나 이로써 이득을 취한 때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법ㆍ부당하게 유출ㆍ사용하거나 이로써 이득을 취한 때

6. 대리점의 실질적 경영자가 사망하거나, 한정후견,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②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와 관련

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2회 이상의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급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대리점에게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리점의 영업업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14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공급업자는 제2항의 시정요구기간 중에는 고객의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전산 온라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⑤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4일간의 기간을 두고 공급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 및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그 이행이 없는 때에는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등의 지급을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2. 공급업자가 지원을 약속한 금전 기타 물품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물품을 일방적으로 회수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공급업자가 이 계약 또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별 부속약정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공급업자의 법 위반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⑥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21조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대리점의 계약해지]

①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급 감염병이 발생 및 유행하는 경우

4. 그 밖의 대리점의 책임 없이 위 각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공급업자가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에 대한 응답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의 종료에 따른 조치]

①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대리점은 즉시 공급업자에게 위탁 받은 업무 일체를 인계하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급업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여행자 등 고객 관련 제반 자료 및 이 계약을 근거로 대여 또는 지급된 물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고객의 개인정보 폐기 확인서를 제출한다.

②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정산 후 지체 없이(쌍방의 합의로 정한 기한이 있다면 그 기일까지) 이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만약 일방이 이러한 변제의무를 지체 하거나 미이행시 정산일 익일부터(쌍방의 합의로 정한 기한이 있다면 그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정산 후에도 대리점의 미정산 채무가 있는 경우 공급업자는 담보권 내지 보증보험증권상 권리를 행사하여 미정산 채권 및 지연손해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등]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합의된 의사에 따른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반 상관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절차에 의하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24조 [계약의 효력 등]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③ 이 계약서의 내용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공급업자		대리점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